

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2일.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만희)

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의 이용 제공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,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,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사업계획서 작성(안 제6조)
- 사용 및 사용허가(안 제8조)
-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제11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종합검토결과

- 평창읍 종부리 산 66-1번지상 사업비 115억을 투자하여 지난 10월 4일 개관된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(건평 1,208평, 부지 8,650평)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- 주요골자를 보면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, 군수는 회관의 관리·운영에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관의 운영계획서는 매년 1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자구등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용료만으로는 인건비 지급, 유지관리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연간 5억정도의 군비 전액지원이 불가피하여 군 재정악화가 우려되고, 운영을 위한 특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판단되며, 위탁예정 단체인 평창군 문화원과 긴밀한 협조와 활성화 방안을 집중 연구하여 군민의 문화·예술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1. 문화예술회관 현재의 운영은?	○ 현재 건물인수가 안된 관계로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음
2. 문화예술회관의 연간운영비는?	○ 4억에서 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.

5. 토론요지

가. 영사, 보일러등 특수직 종사자의 인력확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1부 . 끝 .